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」 규약
일부개정 동의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「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」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- 가.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』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,
- 나.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(2020.10.16.)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(규약 제3조)
 - 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
 -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
- 나. 임원 확대 구성(규약 제5조)
 - 회장,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
- 다.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(규약 제12조)
 - 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(안전)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 152조 ~ 제 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은

우리 구청이 가입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,

○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회원 자격 요건 추가(규약 제3조)

회원 자격요건을 외국인주민 1만명 거주 외에

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비율이 3%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추가

나. 임원 확대 구성(규약 제5조)

회장, 부회장 각 1인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으로 확대

다. 협의회 주관 회의 참석기관 확대(규약 제12조)

회원도시가 아니더라도 협의회 (안건) 관계 기관의 경우에는 회의 참석 가능

○ 검토의견

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성격인 전국다문화 도시협의회 규약의 일부개정 내용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)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“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 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 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 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 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 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 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